

대전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8481 판결 [점유회수]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8481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7. 22 선고 2014가단1866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C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 선고 2015. 12. 9.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7. 22. 선고 2014가단186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와 제3항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토지 인도청구는 각 기각하고, 건물 인도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의 유치권에 기한 적법 점유 주장"

피고는, 2013. 1.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H, D와 사이에 성토작업 및 터파기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경부터 3.경까지 위 각 공사를 하였는데, H,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13. 7.

31.경부터 며칠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위 유치권에 기하여 2014. 5. 14.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2014. 9. 26.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08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 있어 본권에 관한 이유에 기초하여 재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 본권에 관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점유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본권이므로, 피고의 점유 침탈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점유회수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민법 제320조 제2항은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점유 침탈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희

판사조형목

판사박지은

별지